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0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4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1조제2항제4호 중 “(한옥보전구역은 제외)”를 삭제하여 한옥건축양식의 보조 및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21조제2항제4호 중 “(한옥보전구역은 제외)”를 삭제함(안 제21조제2항제4호).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1조제2항제4호 중 “용자지원(한옥보전구역은 제외)”을 “용자지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1조(한옥의 소요비용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한옥건축양식: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용자지원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(한옥의 소요비용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한옥건축양식: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 (한옥보전구역은 제외)</u></p> <p>5. <u>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옥의 경우: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조 및 용자금의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</u></p>	<p>제21조(한옥의 소요비용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용자지원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한옥건축양식: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

5.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옥의 경우: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조 및 용자금의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한옥의 소요비용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한옥건축양식: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용자지원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(한옥의 소요비용 지원) ① (현행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한옥건축양식: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</u></p> <p>5. <u>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옥의 경우: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조 및 용자금의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</u></p>